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22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2월 28일(월)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4일(금)

2. 제출사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2022.1.1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다. 회의 및 직원(안 제6조 ~ 제7조)
-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8조)
- 마.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위원 등 준수사항(안 제10조)
- 사.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1조)
- 아. 운영세칙(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입법예고: 2022. 1. 27. ~ 2. 16.(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이며, 그동안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되어온 구청장 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던 바, 사무인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구청장 당선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등 구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임기 동안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임.
- 동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관련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 존속기한의 종료와 더불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촉된다 할 것임.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이며 제3항에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 구성과 인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자문위원까지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원회 운영세척에 적정 규모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임.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구 소속 공무원의 파견도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활동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위원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이를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임.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어긋남이 없고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26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2월 28일(월)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4일(금)

2. 제출사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2022.1.13.)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 나. 의견 제출 방법 등(안 제4조 ~ 제5조)
- 다. 제출된 의견 검토(안 제6조)
- 라. 의견의 반영(안 제7조)
- 마. 차별대우의 금지 등(안 제8조)
- 바. 의견 제출인 표창(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입법예고: 2022. 1. 27. ~ 2. 16.(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되어 자치법규인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현행 행정절차법을 보면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견 제출은 가능하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여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등 주민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는 바, 금번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제¹⁾와 더불어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할 것임.
- 다만,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마포구는 동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구민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견제출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2.2.10. 시행)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022. 3. 15.)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27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2월 28일(월)
- 라. 회부일자: 2022년 3월 4일(금)

2. 제출사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마포구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9건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5.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규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개정함이 원칙이나, 개정의 목적이나 사유가 유사한 경우에는 법규 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개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칙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의결시에는 1건으로 처리됨.
- 다만, 일괄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소관 조례까지 개정하게 되어 자칫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대상 조례의 공통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20건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괄개정의 사유 역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